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 규정

제정 :	2017.	2.	28.
개정 :	2018.	3.	1.
개정 :	2019.	6.	18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과학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"Suwon Science College Institutional Review Board : SSC IRB"로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게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.
- ②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③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(Deoxyribonucleic acid), RNA(Ribonucleic acid), 단백질 등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
- 2.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
- 3.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
- 4.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
- 5.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가 본 규정 및 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진행되고 연구 결과물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 '감독하며, 승인한 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본교 연구자가 본 규정 및 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

발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실과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.

- ④ 위원회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 - 1.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교육
 - 2.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의 마련
 - 3.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
 - 4.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용역과 연구의 수행

제5조 (구성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, 교내위원 5인 이상과 외부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 - 1. 인간대상연구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본교 전임교원
 - 2. 인간대상연구등에 관하여 윤리적 타당성 및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본교 전임교원
 - 3.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
 - 4. 사회적·윤리적·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명과학 관련 비전문가
 - 5.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-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·개발 또는 이용과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·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.
- ⑥ 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학기 당 1회 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1. 총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
 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**제7조 (위원의 제척)**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인간대상연구등의 연구·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제8조 (자문위원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이 위촉하다.
- 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9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심의 관련 문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1인의 전문간사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과에서 관장하며 행정간사를 둔다. 행정간사는 수원과학대학교 직원이 담당하며 회의록, 접수 등 사무관리를 한다.
- 제10조 (문서의 보관 및 관리) ① 사무국은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문서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회 구성, 운영 규정 등
 - 2.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이력서(성명, 성별, 소속, 직위, 전공, 학력, 비고 등)
 - 3. 위원회 위원에게 지불된 지급액을 포함한, 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
 - 4. 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지침
 - 5. 회의록
 - 6.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: 심의될 모든 연구계획서, 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근거자료, 승인된 동의서 양식,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연구진행보고서 등
 - 7. 연구자에게 통보한 심의 결정문 사본
 - 8. 지속심의 활동에 관한 기록
 - 9. 연구에 대한 완결,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에 관한 기록
 - 10. 연구에 대한 최종 요약문 또는 최종 보고서
 - 11. 심의면제 및 신속심의에 관한 기록
 - 12. 위반·이탈사례 및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기록
 - 13. 연구책임자에 의해 제출된 진행보고서(해당자에 한함)
 - 14. 승인된 동의서 양식
- ③ 모든 문서는 전자파일로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 형태에 따라 기밀유지가 적절한 시스템 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.
- ④ 문서보존 기관이 만료된 문서는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.
- 제11조 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활동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인간대상연구의 심의)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

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.
- 제13조 (인상대상연구의 동의)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받아야 한다.
 - 1. 인간대상연구의 목적
 - 2.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, 절차 및 방법
 - 3.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들
 - 4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 사항
 - 5.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
 - 6.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 - 7.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.
 - 1. 법정대리인
 - 2.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,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,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하다.
 - 1.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,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
 - ④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)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·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수행 중인 연구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(害惡)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

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15조 (개인정보의 제공)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.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6조 (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) ①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.
- **제17조 (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)**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1.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
 - 2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- 3.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
 - 4.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(이하 "인체유래물등"이라 한다)의 제공에 관한 사항
 - 5. 동의의 철회,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,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, 연구 목적의 변경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아닌 인체유래물 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를 하는 인체유래물연구자의 경우에 그 인체유래물 채취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③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연구대상자" 는 "인체유래물 기증자"로 본다.
 - ④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- 제18조 (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)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②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・보관하여야 한

3-0-38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 규정

Cł.

제19조 (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)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인간대상연구"는 "인체유래물연구"로, "연구대상자"는 "인체유래물 기증자"로 각각 본다.

제20조 (연구자의 심의비) ① 연구책임자는 심의 신청과 함께 심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사무국은 연구책임자가 제1항의 심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접수를 하지 않는다.
- ③ 심의비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.

제21조 (표준운영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